

## 골드바 약관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8년 4월 5일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p>제1조 ~ 10조 &lt;생략&gt; 제11조 ①~⑦ &lt;생략&gt;</p> <p>제 12조 ① 생략 ② 은행은 전쟁, 천재지변, 전산장애, 정전,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를 일시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 ⑤ &lt;생략&gt;</p> <p>제13조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 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p> <p>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p>	<p>제1조 ~ 제 10조 &lt;생략&gt; 제11조 ①~⑦ &lt;좌동&gt; ⑧ 은행은 전쟁, 천재지변, 전산장애, 정전,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를 일시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제 12조 ① &lt;좌동&gt; ② 삭제</p> <p>③ ~ ⑤ &lt;좌동&gt;</p> <p>제13조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p>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 제16조 (생략)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최종 영업일까지 골드바 매매대행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 제16조 <좌동>